

의안  
번호

45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7.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50호
- 다. 제출일자 : 2025. 04. 04.
- 라. 회부일자 : 2025. 04. 10

### 2. 제안이유

- 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 나.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

### 3. 주요내용

####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
- 2)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
- 3) 설치연도 : 2020. 12. 31.

####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 다. 2025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정예산       | 변경예산       | 증감액       |
|-------------|------------|------------|-----------|
| 기금규모(수입·지출) | 72,052,238 | 81,029,992 | 8,977,754 |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정예산(A)    | 변경예산(B)    | 증감액(B-A)  | 증감내용                            |
|-------|------------|------------|-----------|---------------------------------|
| 계     | 72,052,238 | 81,029,992 | 8,977,754 |                                 |
| 예치금회수 | 70,413,514 | 70,264,447 | △149,067  | (감)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br>예치금회수 변경 |
| 예수금수입 | 470,236    | 9,190,920  | 8,720,684 | (증)일반회계 8,720,684천원             |
| 이자수입  | 1,168,488  | 1,574,625  | 406,137   | (증)예수금 증가에 따른<br>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정예산(A)    | 변경예산(B)    | 증감액(B-A)  | 증감내용                          |
|---------|------------|------------|-----------|-------------------------------|
| 계       | 72,052,238 | 81,029,992 | 8,977,754 |                               |
| 일반예치금   | 30,380,682 | 39,358,436 | 8,977,754 | (증)예수금 증가에 따른<br>연도말 기금조성액 증가 |
| 예수금원금상환 | 41,671,556 | 41,671,556 | 0         | 통합계정→일반회계 원금상환                |

3)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조 성 액                                                                | 사 용 액                     | 2025년말 조성액(잔액) |
|----------------------------------------------------------------------|---------------------------|----------------|
| 81,029,992                                                           | 41,671,556                | 39,358,436     |
| · 예치금회수 : 70,264,447<br>· 예수금수입 : 9,190,920<br>· 이 자 수 입 : 1,574,625 | 예수금원금 상환<br>(통합계정 → 일반회계) | 2026년도 이월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변경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탁금 및 이자 수입 증가분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예치금 축소에 따른 2025년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sup>1)</sup>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임.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탁금 87억원과 '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분 1억 4,096만원을 예치금 수입에,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4억 613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89억 7,775만원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9.5%, 89억 7,775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2)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